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17

[redacted]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3구합2612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	A
피 고	[redacted]시장
변 론 종 결	2015. 3. 24.
판 결 선 고	2015. 4. 2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3. 5.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2007년도 금 9,700,000원, 2008년도 금 1,495,420원, 2009년도 금 2,046,960원, 2010년도 금 2,119,250원의 부과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17

1. 기초사실

가. B은 2007.경 이전부터 배우자 C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0. 10. 18. 사망하여, 원고가 B을 단독상속하였다.

나. [redacted]세무서장은 B이 대부업을 하면서 2007. 45,654,000원, 2008. 78,137,000원, 2009. 106,387,190원, 2010. 117,100,000원의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, 2013. 5.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, 4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각 처분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것으로 그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(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),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은 날이 2013. 5. 15.임을 자인하고 있고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. 8. 20.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소는 법률에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17

재판장 판사 박남천

판사 김윤희

판사 김윤석